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
일부개정법률안  
(차지호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3021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6.

발 의 자 : 차지호 · 김현정 · 박희승  
황명선 · 임호선 · 안호영  
김영진 · 신정훈 · 정을호  
양부남 · 박 정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·기술정보를 보유·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).



##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공공기관으로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국가연구  
· 기술정보를 보유한 기관
5. 제4호 외의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  
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으로 고시한 기관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4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공공기관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.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|
| 1. ~ 3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3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 <u>공공기관으로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국가연구·기술정보를 보유한 기관</u>       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. <u>제4호 외의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으로 고시한 기관</u> |
| ③ ~ ⑫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~ ⑫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